

인천항만공사 - 인천대학교

업무협약서

인천항만공사와 인천대학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는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·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보유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혁신 및 공공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·운영
2. 지역 인재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
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상호 교류
4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협조
5. 항만물류·해양환경 등 인천항 특화 분야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
6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항

제3조(협력방법) 본 협약에 명시된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 및 세부사항은 양 기관 간 실무 협의 및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및 자료를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 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된다.

제5조(협약의 효력 및 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다만, 협약 기간 만료 전까지 양 기관의 상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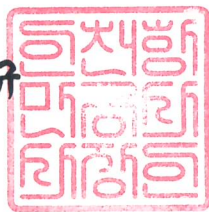
제6조(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
양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부의 협약서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4월 29일



사장 이 경 규



총장 이 인 제

